

의안번호	2204832
의 퇴 인	문대림의원
회 답 일	2024. 8. 28.
추계번호	24C25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의5제1항(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 및 청년을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7조의5제1항(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확대(안 제47조의5제1항)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제4호에서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24년 2월 제정된 고시(「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따르면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가구 및 청년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경우 사업 확대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다자녀가구 및 청년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라 확대되는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함
 - 참고로 여행이용권은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하여 지급되고 있고,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여행·스포츠관광 모두를 포괄하는 이용권으로 관련 예산 및 1인당 지원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최근 5년간 통합문화이용권 예산 및 발급 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억원)	1,558	1,993	2,936	2,983	3,403
(지방비 포함)					
1인당 지원금(만원)	9	10	11	11	13
(연간)					
발급매수(만매)	175	197	232	255	2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어려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assembly.go.kr